

영등포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3. 26.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7. 3. 19.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개정(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같은법 시행령 제정·시행 (2006.1.1)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개정(안)에 따라 우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30조 내지 제34조)
-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
(안 제35조)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2006.1.1 제정·시행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2006.1.1 제정·시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 2006.6.26 개 정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준비중에 있음.

검토의견

- 2006.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구 여성발전기금 운영규모는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3. 26.

보고자 : 이 남 식